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4호 2012년 12월 pp.87~124
한국세무학회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국외소득면제방식 도입방안

- 영국과 일본의 도입사례를 중심으로 -

송은주* · 마정화**

<요 약>

과거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자본수출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는 worldwide system(전세계 소득과세원칙, 거주지 과세원칙)을 많이 채택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이 증가하고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자국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점차 territorial system(국내소득과세원칙, 원천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은 2009년 영국과 일본이 territorial system에 기반을 둔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다. 영국과 일본이 제도를 변경하게 된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도 국제경쟁력 측면, 국내투자 활성화 차원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대안으로서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영국과 일본의 도입사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하게 될 경우, 면제소득의 유형이나 비용공제 방식 등의 과세체계를 제안하였다. 첫째, 납세자와 과세관청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는 임시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 제도로써 도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면제소득의 범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worldwide system에 기반을 두고 배당소득에 한해 territorial system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적용대상 자회사의 범위는 현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제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용공제와 관련하여 배당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단지 일정비율을 어느 정도로 결정할 지에 대해서는 기존 도입 국가의 사례와 우리나라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외소득면제방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국내 투자로의 유인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배당소득면제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경희대 회계학과 박사과정, eunju@kipf.re.kr, 010-8884-9493, 주저자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법학 박사, mjh6227@gmail.com, 010-9046-6227, 교신저자

I. 서 론

국제조세 분야에서 국가간 이중과세 조정의 문제는 자국의 과세권을 유지하고 세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외국 자본의 유입이나 국내 자본의 유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국제조세 정책론에서는 자본수출중립성을 고려하여 worldwide system(전세계소득과세원칙, 거주지 과세원칙)에 기반을 둔 외국세액공제방식(credit method)이 지지를 받아 왔으며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외국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territorial system(국내소득과세원칙, 원천지 과세원칙)에 기반을 둔 국외소득면제방식(exemption method)으로의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세액공제방식에서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worldwide system에서 완전한 territorial system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각 방식이 혼합된 형태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¹⁾.

많은 국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자본수출중립성을 통한 세계 경제의 효율성 제고라는 장점을 지니는 외국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외국세액공제방식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조세환경의 변화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첫째, OECD 회원국 사이에서 법인세율 인하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율의 격차가 크지 않은 시기에는 worldwide system과 territorial system 중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종합적인 세금부담이 큰 편차가 없었다. 따라서 자본수출중립성의 장점이 있는 외국세액공제방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 간에 법인세율의 편차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세율이 높고 worldwide system을 적용하는 국가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국가의 자회사 이익을 모회사로 송금하는 경우에 외국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모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므로, 자회사배당의 국외소득면제제도를 택한 국가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둘째, 외국세액공제방식에서의 납세비용이 점차 증가한다는 점이다. 외국세액공제방식에서 공제한도액은 통상 국외소득에 대하여 국내 법인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다²⁾. 납세비용 측면에서만 볼 때 국가별 한도방

1) worldwide system과 territorial system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는 것으로, 전세계 소득과세원칙·국내소득과세원칙 또는 거주지 과세원칙·원천지 과세원칙 등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worldwide system과 territorial syste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worldwide system과 territorial system은 과세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는 원칙으로 각각의 과세원칙에 따라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도 달라지는데, worldwide system에서는 외국세액공제방식을 territorial system에서는 국외소득면제방식에 의해 조정하고 있다.

2) 이러한 형태의 세액공제는 ‘일반세액공제’라 하며, 자국의 세수를 잠식하면서까지 외국세액을 공제하는 ‘완전세액공제’와는 구별된다.

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별 한도방식을 적용하는 국가는 드물다. 예를 들면,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도 국가별 구분 없이 일괄한도를 적용하고 있다.³⁾ 이러한 세액공제제도 하에서는 고세율 국가와 저세율 국가에서의 외국소득을 합산함으로써 한도액을 유용하려는 유인이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원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설계된 제도이나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조세전략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납세비용이 증가하고, 또한 그러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세무당국의 집행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과세체계를 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현재 우리 경제가 자본수출국 입장인지 자본수입국 입장인지 또는 고세율 국가에 속하는지 저세율 국가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의 글로벌 경제에서는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의 입장 또는 고세율과 저세율의 입장이 상당히 혼합되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향후 방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종석(2009)의 연구는 해외 배당 소득에 대해 국내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면제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정현경(2009)의 연구는 우리나라가 territorial system을 도입할 경우 과세시스템의 간편화와 세수증가 및 각종 본사 활동의 유치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점은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에 관한 과세방식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최근에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하여 territorial system을 도입한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국내 도입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항구적인 제도로 운영할지 여부에 대한 문제, 면제소득의 범위, 적용 자회사 요건, 비용배분, 조세회피 방지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Ⅱ장에서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영국과 일본의 국외소득면제방식 도입사례를 고찰한 후, 제Ⅳ장에서 두 나라의 도입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및 대안적 과세체계를 제안하고 제Ⅴ장에서 결론을 맺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Ⅱ. 국외소득면제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제적 동향

1.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에 관한 과세이론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조정 수단으로서 OECD 모델조약 23조

3) 미국의 경우 국가별 한도적용방식이 아닌 소득유형별한도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에서는 국외소득면제방식과 외국세액공제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국외소득면제방식이란 국가의 과세권은 속지주의를 따른다는 입장에서 국외원천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국외소득면제방식 하에서는 자국의 기업이나 국민이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해당 국가 및 기타 국가의 기업들과 동일한 세부담으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수입중립성이 확보된다. 반면 외국세액공제방식이란, 국가의 과세권은 속인주의를 따른다는 입장에서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자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松田直樹 2009).

국제조세정책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자본수출중립성을 고려한 worldwide system(전세계소득 과세원칙, 거주지 과세원칙, 외국세액공제방식(credit method))을 많은 국가들이 지지하여 왔다. 미국, 일본,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이러한 worldwide system을 채택해 왔으나 최근 영국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OECD 국가들이 worldwide system에서 territorial system(국내소득 과세방식, 원천지 과세원칙, 국외소득면제방식(exemption method))으로 이행함으로써 각 과세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淺妻章如 2006).

worldwide system 하에서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외국세액공제방식에 의해 조정하고 있다. 이는 자국의 기업이나 국민의 국내투자와 국외투자의 세부담이 동일해지도록 국내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본수출중립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완전한 형태의 외국세액공제방식이라면 외국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전액 거주지국의 세액에서 공제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주지국의 국내원천소득 관련 세액에서까지 외국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제한도액을 두고 세액공제금액을 제한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지국의 세율이 거주지국보다 고율인 경우 실제 외국납부세액 중 외국세액공제에 의해 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공제한도를 정하는 것 외에도, 공제대상 외국세액을 판단하는 문제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손실의 취급에 있어서 조세회피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하다 보니 제도가 복잡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국외소득면제방식은 거주지국의 세수 감소나 이중면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거주자가 저세율 국가로의 투자를 증가시킬 유인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松田直樹 2009). 국내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worldwide system을 적용하더라도 자본수출중립성을 통한 세계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왜냐하면 worldwide system이 자본수출 중립성을 통해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worldwide system을 적용하여야 하고 외국납부세액은 한도가 없어야 하며, 과세이연 등 국외소득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조세회피 기회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세가지 가정이 모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worldwide system을 적용하더라도 세계 경제의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worldwide system은 국내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셋째, worldwide system을 유지

해도 세수입 확보 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이다(안종석 2009). Terrence R.Chorvat(2000)에서도 worldwide system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worldwide system에서는 거주지국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국내에 송금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 것이므로 다국적기업의 국외자회사는 국외원천소득을 모회사에 송금하지 않음으로써 글로벌적인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국외에 소득을 유보 시키려는 유인이 증가한다. 결국 모회사에 송금하는 소득액이 점점 감소함으로써 해외 자회사의 유보액은 점차 증가한다. 따라서 외국세액공제 방식이 가지고 있는 세계 경제의 효율성 제고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가 송금시점까지 이연되는 worldwide system은 국외소득면제방식 아래에서의 자본 배분과 동일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territorial system에서는 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의 과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기 않게 된다. territorial system에 따르면, 원천지 국가에 기반을 둔 법인에 있어서 과세상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자본수입중립성을 보장하는 과세방식이다.

territorial system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제도의 설계에 따라 경제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해 territorial system에 의한 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한 것은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송금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일본과 같이 자국의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외국세액공제방식 하에서는 본국으로 송금되는 시점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자회사에 소득을 계속 유보하려는 유인이 있다. 이는 해외 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은 본국으로 송금되는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을 본국으로 환류하는 대신 국외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본국에서의 투자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하였다.

다국적기업은 저세율국에 소득을 유보함으로써 모회사가 존재하는 국가에서의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세액공제방식에서는 저세율국에 자본이나 소득을 이전시키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다. 모회사로 배당되는 자금에 대한 세부담의 크기가 모회사에의 배당액의 크기나 다국적기업의 투자처의 결정과 관련되는 판단에 영향을 주어 그 결과, 자금의 국제적인 흐름이 저해됨으로써 경제적 중립성·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실제로 미국과 같이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의 다국적기업에서는 자본이나 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고 미국에서는 이미 잠재적인 고용 기회나 세수입의 손실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있다(Rosanne Altshuler and Harry Grubert 2001). 외국세액공제제도가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절한 지적이지만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이행하게 될 경우 저세율국으로 자본과 소득을 이전시키고자 하는 인센티브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이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 있어서 세액공

제방식에서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해외에 있는 이상 다국적기업의 해외 진출 움직임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을 억제하는 세제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외에서의 경쟁 조건을 균등하게 하는 조세체계를 갖추 필요가 있다(Kristen A. Parillo 2009).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의 이전을 지지하는 또 다른 견해로서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이행하더라도 세수 감소는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실제로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 국외자회사로부터 모회사가 받는 소득의 형태를 과세대상이 되는 사용료에서 과세 면제가 되는 배당으로 바꿈으로써 모회사가 존재하는 국가의 세수입 감소가 예측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외소득면제방식의 경우 외국세액공제방식에서 가능했던 외국세액공제 여유액을 이용한 공제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모회사의 과세소득에서 국외원천소득에 귀속되는 이자비용이나 관리비용의 공제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국외소득면제방식의 제도를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오히려 과세면제방식이 세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Harry Grubert 2001).

아직까지는 국외소득면제 방식으로의 이행을 지지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은 아니지만 worldwide system하에서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가 충분히 조정되지 않는 것이 납세자의 사업 형태의 선택이나 부채비율 및 법인의 배당성향 등에 왜곡을 일으키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각 국가마다 국경을 넘는 배당에 관한 과세 제도의 재검토와 더불어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세제의 구축을 위해 territorial system을 지지하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

2.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에 관한 동향

가. Territorial system으로의 전환

대부분의 국가들이 순수한 의미의 worldwide system과 territorial system 대신 두 제도가 혼합된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주된 특성에 따라 국가별 채택방식은 worldwide system과 territorial system 중 하나로 구분되고 있다. 예전에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orldwide system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 글로벌화가 촉진됨에 따라 각국들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국 자본의 해외유출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표 1>과 같이 OECD 34개국 중 8개국만이 worldwide system을 채택하고 있어서 territorial system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에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한 영국과 일본도 이러한 흐름을 따른 것이며, 미국도 2005년 이후로 territorial system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표 1〉 OECD 회원국의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방식 비교

유 형		국 가
worldwide system		칠레,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폴란드, 미국
territorial system ¹⁾	100% 과세면제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97% 과세면제	노르웨이
	95% 과세면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슬로베니아, 스위스

주1) 이 보고서에서 ‘territorial system’은 소득 유형 중 배당소득만을 면제하는 배당면제방식(dividend exemption)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worldwide system를 기본으로 하면서 territorial system을 일부 도입한 형태로 이해해야 함

자료 : Business Roundtable(2011), p.15

territorial system을 채택하는 경우 모회사의 국외원천소득 중 과세면제되는 소득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배당소득이다. 즉, 이자소득, 로열티소득과 같은 수동적 소득은 과세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모회사의 전세계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다. 또한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한 territorial system은 면제요건과 비용공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면제요건에 대해서는 해외자회사 지분에 대한 최소 지분율을 설정하는 방식, 해외자회사 지분에 대한 최소 보유기간을 설정하는 방식, 해외자회사의 소재지를 제한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PWC 2010, 5). 이러한 요건들은 지분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사업목적으로 모회사가 해외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해외배당에 대해 과세면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이자비용, 본사관리비용, 연구개발비와 같이 모회사의 비용이 해외자회사 소득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모회사의 과세소득에서 공제가능한 비용의 범위에 따라 과세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모회사 간접비용 중 해외자회사의 소득을 창출하는 데에 소요된 부분을 구분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이러한 배분규정을 두지 않는다⁴⁾. 그러한 배분규정은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행정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대신 간편한 방법으로서 배당소득의 일정 부분을 과세면제에서 제외함으로써(<표 1>의 97% 과세면제 또는 95% 과세면제) 결과적으로 비용의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장치 대신 영국과 같이 그룹사만을 대상으로 모회사의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특정 비용공제를 제한할 수도 있다.

4) 미국은 territorial system을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모회사의 간접비용을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하여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미국의 논의

미국은 여전히 worldwide system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국 기업의 경쟁력 문제와 조세중립성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territory system의 도입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특히, 현행 세제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territory system으로 전환할 경우 그 예상효과와 세부적인 과세 체계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2004년 American Job Creation Act를 통해 해외자회사로부터 송금된 배당에 대한 한시적 감세를 시행한 결과 기대 이상으로 해외 유보이익이 국내로 유입된 한편, 유럽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를 인하 공세 속에서 기존의 worldwide system의 경쟁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5년 1월 양원 세제위원회는 territory system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Staff of 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2005). 양원 세제위원회는 미국의 현행 외국세액공제방식은 국외소득의 과세이연과 공제범위의 상호유용⁵⁾을 통해 오히려 territory system 보다도 경쟁상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복잡한 조세계획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세 요인으로 인해 사업상 결정을 교란시킴으로써 조세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관련 문제로서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주식 양도이익도 비과세하고, 자회사와 지점 간에 과세상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외국 지점에서 얻는 해외 소득도 면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05년 11월 대통령자문위원회도 ‘소득세 간소화 계획’으로서 worldwide system으로의 이행을 다루고 있다(Report of the President's advisory panel on federal tax reform 2005). 여기에서도 현행 worldwide system에 의한 과세방식이 지닌 문제점으로서 프랑스, 네덜란드 등 territory system을 채용한 국가와의 경쟁조건상 차이를 언급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서 조세중립성에 반해 투자장소에 대한 사업결정을 왜곡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외소득면제 대상소득은 해외자회사 뿐만 아니라 해외지점이 외국에서 가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면서, 국외 원천소득을 해외사업소득(foreign business income)과 해외자산투자소득(income generated by foreign assets)으로 구분해, 전자에 대해서는 국외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종래 외국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즉, 배당면제를 채용하는 국가에 본거지를 둔 다국적 기업들 간에 공평한 경쟁조건이 보장됨과 함께, 기업의 배당송금에 대해 조세목적상 조작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활동에 대한 중립성이 회복됨으로써 효율성과 간소화의 2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았다. 현행법 자체가 이미 worldwide system과 territory system의 하이브리드 성격을 갖고 있어서 국외 소득면제방식의 도입에 따라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 저세율이 적용되는 로열티에 대한 공제여유액을 이용해 고세율이 적용되는 자회사배당에 대한 외국납부 세액 공제액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2007년 12월에 발표된 재무부 보고서는 위의 양원세제위원회와 대통령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국외소득면제방식을 ‘기본적인 배당면제방식(basic dividend exemption system)’이라고 정의⁶⁾한 후, ① 능동적 사업소득에 대한 취급(지점소득도 과세면제), ② 수동적 또는 고도의 이동성 있는 소득에 대한 취급(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 과세), ③ 비용의 배분(국외소득에 대응하는 모회사 등 비용공제의 부인), ④ 이전가격과의 관계(소득의 해외이전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집행 적정화 요청), ⑤ 세수효과(10년간 400억 달러 세수증대)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07). 한편, 2010년 대통령위원회 보고서에서는 국제조세 관련 개혁안으로서 ① (순수한) territorial system으로 이행 방안, ② 법인세를 인하와 함께 (순수한) worldwide system으로 전환 방안, ③ 해외소득에 대한 이연과세 제한 또는 종료 방안, ④ 법인세를 인하와 함께 현행 제도 유지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The president's economic recovery advisory board 2010).

미 112대(2011-2012) 의회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미국 법인세법 개혁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면서 법인세를 인하와 territory system으로의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⁷⁾. 그러나 최근 정부안⁸⁾은 territory system으로의 이행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보이고 있다. 정부관계자들은 순수한 territory system은 현행 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수익이 전혀 과세되지 않는다면, 이들 기업들이 외국으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미국이 아닌 지역으로 소득을 전환하도록 회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유인을 더욱 제공하게 되며,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자국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경쟁이 지나치게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을 볼 때, 당분간은 미국 정부가 worldwide system을 유지하는 선에서 기업의 경쟁력이나 조세중립성 문제에 대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의한 국내 고용과 투자 감소 등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territory system 도입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 볼 수 있다.

6) 한편 ‘기본적인 배당면제방식’을 채택할 경우의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이동성 소득(mobile income)에 대한 과세면제제외, 특정 국외원천 로열티 및 이자에 대해서도 면제제도 적용확대, 비용 부인범위의 감소와 같은 ‘대체적인 방식(alternative territorial approaches)’도 제안하고 있다.

7)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H.R. 937, H.R. 1036, H.R. 1834, H.R. 2682

8) A Joint Report by The White House and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2) ;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해외 선박회사에 대한 공제를 취소하고 국내로의 고용창출을 유인하는 반면, 해외 수익에 대해 새로운 최저한세를 설립함으로써 미국의 과세기반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법인세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III. 영국과 일본의 국외소득면제방식 도입사례

1. 영국

가. 도입배경

영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07년에 내국법인의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개혁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HM Treasury & HMRC 2007), 2009년 세법개정을 통해 국외소득면제방식이 도입되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법인세제 구축을 위한 개편 작업⁹⁾과 함께 controlled foreign companies(이하 'CFC') 제도¹⁰⁾, R&D 세액공제, 로열티소득 우대제도(patent box regime) 등의 국외소득면제방식에 대한 보완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국외소득면제방식의 단점으로서 인위적인 소득 이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영국 세수가 침해되지 않도록 CFC 제도를 실체접근법에서 거래접근법¹¹⁾으로 전환하고, 다국적 기업의 영국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자공제 세제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개정하였다.

그 배경¹²⁾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계화의 영향으로 영국도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가 국제적으로 다변화되어 2002년 이후로 영국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보유 비율이 5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에서 다국적 기업을 이용한 기업 활동이 증가하고, 신흥시장의 수익률이 성장하는 등 경제 활동의 초점이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고민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한편, 영국의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시기에는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았지만, 국제적인 세율 인하 경쟁에 따라 2000년대 이후에는 다국적 기업이 영국에 투자할 만한 매력의 점차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해외소득이 국내로 송금되지 않거나 영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형태로 송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의 복잡한 지배구조 때문에 세액공제방식에 대한 행정상 비용이 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영국은 기업들에게 경쟁력 있는 과세제도를 적용할 것을 목표로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

9) 영국의 주요 법인세법 개혁안 중 하나는 법인세율 인하이다. 영국의 기본 법인세율은 2010년 28%, 2011년 26%, 2012년 24%로 인하되었고, 2013년에는 23%로 인하될 예정이다.

<http://www.hmrc.gov.uk/rates/corp.htm>

10)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피지배외국회사 세제(또는 조세피난처 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11) CFC 제도에서 거래접근법은 피지배외국회사의 특정 거래 또는 소득의 종류에 착안하여 피지배외국회사의 가득소득 중에서 적용대상으로 정의된 특정 소득만을 합산하는 방식인 반면, 실체접근법은 합산 대상으로 외국 자회사 자체에 주목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합산 대상인 피지배외국회사를 구분하여 그 회사의 모든 소득 종류를 불문하고 합산하는 방식이다.

12) HM Treasury & HMRC(2007)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입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적 특성상 국제조세법과의 조화 필요성도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하게 된 주요 요인이 되었다.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업들은 국내법상 과세문제로 인해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제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유럽사법재판소는 국내법이 회원국들 간의 과세권을 균형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EC 조약의 근본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영국의 종전 제도¹³⁾에 의하면 배당소득의 원천이 국내인지 또는 국외인지에 따라 과세방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은 모회사의 과세소득으로 보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였지만, 국내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모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해외 자회사를 보유하는 많은 기업들은 국외 배당에 대한 영국의 과세제도가 EC법에 위반된다고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높게 과세하지 않는 한 EC조약 제43조 설립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지분을 10% 이상의 투자)에 대한 과세제도는 EC법의 입장과 일관되지만, 포트폴리오투자(portfolio investment ; 지분을 10% 미만의 투자)에 대한 과세제도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기 때문에 EC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¹⁴⁾. 이에 따라 영국은 해외직접투자자와 포트폴리오투자자 간의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를 구상하게 된 것이다¹⁵⁾.

13) 국내투자·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포트폴리오투자에 대한 종전 세제는 다음과 같다.

〈표〉 영국 구세법상 투자유형별 과세방식

	국내투자	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지분율 10% 이상)	과세면제	과세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포트폴리오투자(지분율 10% 미만)		과세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만 인정

14) Case C-446/04 Test Claimants in the FII Group Litigation ; 여기서 말하는 외국직접투자는 지분율 10% 이상인 투자를, 포트폴리오투자는 지분율 10% 미만을 의미한다.

15) 위의 FII 사건 외에도 CFC 세제와 관련된 Cadbury Schweppes 사건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Cadbury Schweppes 사건에서는 EU 회원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국내 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불리한지가 다투어졌다. CFC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자회사의 수익은 국내모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만, 국내자회사의 수익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CFC 제도가 해외투자를 방해했기 때문에 EC조약 제43조 및 제48조상 설립의 자유에 위반되었다고 판시하면서도 조세회피 기업을 적정하게 규제하는 범위에서는 정당화된다고 판시하였다. Case C-196/04 Cadbury Schweppes.

나. 국외소득면제방식

(1) 적용대상

영국 세법에 도입된 국외소득면제방식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영국이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던 초기에는 대기업과 중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소기업¹⁶⁾은 기존 세액공제 방식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세액공제 방식을 단순화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¹⁷⁾. 그러나 실제 국외소득면제방식이 세법에 도입된 방식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신, 대기업과 중기업에 대한 요건과 소기업에 대한 요건에 차등¹⁸⁾을 두는 형태로 되어 있다. 또한 초기 논의에서 국외소득면제방식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 이상인 해외직접투자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나,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법에는 지분율에 상관없이¹⁹⁾ 국외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도입되었다.

(2) 면제소득의 범위

1) 배당소득

국외소득면제방식이 주로 적용되는 대기업과 중기업의 면제소득 범위를 살펴보도록 한다²⁰⁾. 영국의 국외소득면제방식은 분배금(distributions)에만 적용되며, 국외원천 배당소득과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동일한 과세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자소득이나 로열티 소득은 종전의 세액공제방식을 따르게 된다. 과세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다음에서 기술하는 5가지의 ‘면제유형’(exempt classes)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둘째, 세무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 이자소득²¹⁾이 아니어야 하며, 셋째, 외국세법에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어떠한 공제도 허용되지 않아야 하고, 넷째, 면제유형과 관련된 개별적인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 중 세 번째 요건은 해외자회사의 소득이 경감세율 대상인 로열티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결납세제도(group relief)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배당소득은 영국에서 과세

16) 직원수 50명 미만이면서 매출액이나 재무상태표 총액이 1천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Commission Recommendation 2003/361/EC.

17) 소기업은 중·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자회사와 관련한 복잡한 문제를 겪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래 worldwide system에 의하되 과세규정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초기에 제안된 바 있다. HM Treasury and HMRC(2007), p.4.

18) 예를 들어, 소기업이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해 과세면제받기 위해서는 해외자회사가 적격지역에 소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재진·송은주·마정화(2012) 보고서 참조.

19) 그러나 면제유형을 보면 입법취지와 맞지 않게 지분율 10% 이상 50%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소득면제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Goulder(2011), p.530.

20) 소기업의 면제소득 범위는 김재진·송은주·마정화(2012) 보고서 참조.

21) 영국 세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자범위를 넘는 이자소득 부분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 ICTA 1988 §209(2)(d).

면제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heppard 2011, 9). 이는 이중과세면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과세면제 요건을 보면 배당소득의 범위를 5가지의 ‘면제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있다²²⁾.

① 면제유형

첫 번째 면제유형은 피지배회사(controlled companies)로부터 수취한 분배금이다. 여기서 피지배회사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회사를 의미한다.

두 번째 면제유형은 ‘비상환 보통주’(non-redeemable ordinary shares)와 관련된 분배금이다. 여기서 상환가능한(redeemable)의 의미는 해당 보통주의 발행조건상 상환을 의무화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청구권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가 상환할 자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²³⁾. 이 규정은 비상환 보통주로부터의 분배에 대해 과세면제를 넓게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적 조세회피방지 규정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 적용범위가 좁다고 평가되고 있다(Voisey 2009, 537).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선주로 간주되지 않는 주식은 보통주로 보지만, 이 규정의 해석상 보통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⁴⁾. 또한 보통주를 보유하더라도 배당 수령인이나 그 수령인의 특수관계자가 지급회사의 우선주를 보유하게 되면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따라 보통주로부터의 분배에 대해 과세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 면제유형은 ‘포트폴리오 보유’(portfolio holding)와 관련한 분배금이다. 이 때 포트폴리오 보유란 배당수령인이 발행지분의 10% 미만을 보유하면서 그 수령인이 분배가능이익의 10% 미만을 받을 권한(청산시에는 분배가능한 회사 자산의 10% 미만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규정에서 10%를 계산할 때 주식의 종류별로 계산하기 때문(share class by share class basis)에 모든 포트폴리오 보유에서 발생한 분배금이 과세면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급회사의 발행주식의 10% 미만(주식총액/의결권)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지분이 지급회사의 특정 종류 주식 중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되지 않는다.

네 번째 면제유형은 ‘세부담 감소를 의도하지 않은 거래(transactions not designed to reduce tax)’²⁵⁾에서 발생한 분배금이다.

다섯 번째 면제유형은 부채로 계상되는 특정 지분의 분배금이다. 영국 법인세법은 회계상 부

22) 영국이 왜 이러한 유형을 설정하였는지에 대한 입법자료는 분명하지 않다. 이에 대해 영국 내에서도 해당 입법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거나 정책의도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평가되고 있다. Voisey(2009), p.536.

23) CTA 2009, §931U(2).

24) Voisey는 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의 주주가 기초자산에 대한 특정추적권(specific tracking rights)이 있는 보통주를 보유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다.

25) ‘세부담 감소를 의도하지 않은 거래’란 그 거래로 인해 납세액 감소분이 무시할 만하고, 영국 내 납세액 감소가 주된 목적이 아닌 거래를 의미한다.

채로 인식되는 지분에 대해 세무상 ‘대출관계(loan relationships)’로 간주²⁶⁾하는데, 이러한 지분에서 발생한 분배금도 과세면제의 대상이 된다.

②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

해외자회사의 분배금은 5가지의 면제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들²⁷⁾을 충족해야 과세면제된다.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수익을 조정하여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없는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여 CFC 규정을 회피하면서 모회사가 지배력을 취득할 때 분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계열사 간에 지분을 분산시키는 계획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보유와 관련한 분배금에 대해 과세면제하지 않는다.

2) 지점소득

투자형태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국은 2011년에 지점소득에 대한 과세면제제도(branch exemption)를 도입하였다²⁸⁾. 즉, 영국 모회사는 해외지점 수익을 과세면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지점수익에 대해 과세면제를 선택한 경우 모회사의 소득에 대해 지점 손실을 공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지점소득에 대한 과세면제를 선택하더라도 여전히 국내 모기업은 전세계소득을 계산해야 하며, 전세계소득 금액을 기초로 면제소득과 손실을 사후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외 지점이 저세율국²⁹⁾에 소재하여 지점소득에 대한 해외 납부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과

26) CTA 2009, §521A~521F.

27) 면제유형과 관련된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들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영국의 면제유형과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

면제유형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		
	공 통	특 정	
피지배회사로부터 받은 분배금	• 공제가 적용되는 분배를 포함한 계획 • 분배를 위한 지급을 포함한 계획 • 특수관계자 간 지급을 포함한 계획 • 사업소득 전환을 포함한 계획	해당없음	피지배회사 규정의 위장을 포함한 계획
비상환 보통주와 관련한 분배금		대출 성격의 계획	비우선주 또는 비상환주를 포함한 계획
포트폴리오 보유와 관련한 분배금			포트폴리오 보유 규정의 위장을 포함한 계획
갑세를 의도하지 않은 거래에서 발생한 배당금			해당없음
부채로 계상되는 특정 지분의 분배금			해당없음

자료 : 김재진 · 송은주 · 마정화(2012), p.20.

28) FA 2011, schedule 13—Profits of foreign permanent establishments etc.

29) 지점 소득에 대한 해외 법인세액이 동일한 금액에 대한 국내 법인세액의 75%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세면제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조세회피방지규정(anti-diversion rule)을 두고 있다.

3) 주식양도이익

영국 모회사가 보유하는 해외자회사 주식의 양도이익에 대해서는 국외소득면제방식의 전환과 별개로 기존 제도에서도 과세면제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다. 영국 세법에 의하면 회사의 모든 자본이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상기업(trading companies)인 경우나 그룹사가 피투자회사의 보통주를 10%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주식양도이익은 과세되지 않는다³⁰⁾. 따라서 영국 내국법인의 해외주식 양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면제하는 방식과 기존 세액공제방식 하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 혼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비용배분

국외소득면제방식은 기업들이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과세가 면제되는 배당에 의해 고세율국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소득을 인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룹 전체의 세부담이 유리해지도록 그룹 간에 비용을 배분하거나 차입금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본사비용이나 간접경비와 같은 비용을 고세율국으로 배분시켜 고세율국의 과세소득을 줄이도록 하거나 저세율국의 자회사가 고세율국에 소재하는 본사에 대출(소위 ‘상향대출’)한 후 본사가 이자비용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은 국외소득면제방식의 도입을 논의하던 초기부터 복잡한 비용배분방식(interest apportionment or matching rules) 대신 새로운 CFC 세제와 특정 대상에 대한 비용공제제한 규정을 통해 그룹 간 비용공제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HM Treasury & HMRC 2007, 25). 따라서 영국은 다국적 그룹의 국내 계열사가 이자비용을 공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그룹 전체의 연결외부금융비용(consolidated external finance costs)을 한도로 공제금액을 제한하는 ‘그룹 내 금융비용 산입 특례(world-wide debt cap)’를 신설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 다국적 기업의 그룹 전체 외부대출금이 5백만 유로인 경우 국내 계열사는 5백만 유로에 대한 이자비용을 한도로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만일 국내 계열사의 이자비용이 그룹 전체의 금융비용보다 높다면, 이는 전체 그룹의 전세계 과세소득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해당 이자비용을 인위적으로 국내 계열사에 배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Gammie 등 2008).

30) FA 2002, §44 ; TCGA 1992, §192A ; FA 2002 Schedule 8, 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schedule7AC.

2. 일본³¹⁾

가. 도입배경³²⁾

일본이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한 것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방식인 세액공제방식을 버리고 과세면제방식을 택함으로써 기본적인 국제조세체계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는 측면과 국외에 유보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 수익을 국내 투자로 유입시키고자 하는 경제적인 측면 두 가지에서 의미를 지닌다.

첫째, 해외자회사 배당의 이중과세조정 측면이다. 일본의 경우 해외자회사배당 비과세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적용되었던 간접세액공제제도는 1962년의 세제개정으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국제적인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제도로 적용되어 왔다. 1962년의 세제개정에서 현행까지 운영되어 오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와 외국세액공제제도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본의 국내원천 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정비와 간접외국세액공제 등의 도입을 포함한 외국세액공제제도의 개정이었다. 1962년의 세제개정은 1955년의 일·미 조약을 비롯한 일본의 조세조약이 서서히 정비되기 시작한 시점에 있어서, 조약과의 정합성을 의식한 국내법 정비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간접세액공제의 도입은 해외에서의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지점 형태와 자회사 형태 간에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간접외국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던 미국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도입된 것이지만, 고도 경제성장 시기에 해외시장에의 진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일본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적도 있었다.

최근 일본 내에서 외국세액공제제도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쌍방의 납세협력비용을 불필요하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평가되어 왔다. 외국세액공제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외국세액공제에 의한 조세 계획의 중요성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과도한 절세 사례로 인해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외국세액공제 적정화를 위한 세제개정은 제도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었다³³⁾.

31) 일본의 도입사례는 김재진·송은주·마정화(2011)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32) 青山慶二(2009a)와 青山慶二(2009b)에서 요약·정리하였다.

33) (참고) 적정화의 관점에 의한 외국세액공제제도의 개정 경위

1988년(소화63년) : 비과세 소득의 1/2을 국외 소득으로부터 제외, 국외 소득을 전세계 소득의 90%로 제한, 고율 외국 세액(50%초과)의 고율 부분을,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세액으로부터 제외, 공제 여유액, 공제한도 초과액의 이월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1992년(평성 4년) : 비과세 소득의 국외 소득으로부터의 제외 비율을 1/2에서 2/3로 확대, 간접세액공제 대상 법인을 외국손자 회사까지 확대

2001년(평성13년) : 외국 소득세·법인세의 정의 명확화, 통상 인정받지 못한 거래와 관련되는 외국 세액의 제외

2009년 세제개정에서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경을 넘는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방식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던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가 과세면제제도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국제과세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³⁴⁾. 일본은 해외자회사의 수취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할 당시 이미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에 대해서도 익금불산입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법인세법 제23조).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중 일정 부분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은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변경하였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해외 투자수익의 국내 환류라는 측면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8년 8월 「일본 기업의 해외이익의 자금 환류에 대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해외에서의 이익이 일본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해외에 유보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의 경우 2008년 당시 해외 유보액이 급증하는 한편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대비 2004년에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이 5,270억엔에서 8,622억엔으로 약 1.6배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에 해외 현지법인의 내부유보액은 1,378억엔에서 2억 1,811억엔으로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대비 2006년의 내부유보액 증가율은 23.5배에 달한다. 동 보고서에서, 일본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해외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모회사에 배당으로서 송금되는 부분은 적고 많은 이익이 해외 자회사에 유보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세제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 유보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는 배당으로서 송금하는 경우 송금 시점에 일본에서의 추가 납세가 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이며, 추가 과세의 원인이 되는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에 대한 검증이 실시하게 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추가 납세를 일으키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실효세율 격차 문제는 논외로 하고 검토한 결과, 일본 다국적 기업이 일본에서 필요한 사업활동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유보·송금의 선택에 대해 과세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의 해외유보 및 국내 송금에 대한 과세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가 제시되었다. 이에 2008년 11월 정부의 세금조사회는 외국세액공제제도로부터 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로의 변경은 ① 기업의 배당정책 결정에 관한 중립성 확보 및 ② 적절한 이중과세의 배제를 유지하면서 ③ 제도를 간소화한다는 점에서 추천된다는 의견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세제개정안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34) 법인세법 제23조의2

나. 국외소득면제방식

(1) 적용대상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에 의한 주식보유비를 요건과 보유기간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즉,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 주식의 25%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대상이 된다³⁵⁾³⁶⁾. 주식보유비율 25%의 판정은 발행주식 및 의결권주식의 주식 수 또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만족하면 되며 연결납세법인의 경우 25% 지분율의 판정은 연결그룹 단위로 판정한다.

주식보유요건은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정비되어 온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의 적용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은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25%이상 또는 발행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배당의 지분확정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경우이다(정재호 외, 2009).

제도를 도입하면서 간접외국세액공제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 것은 간접세액공제와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국외소득면제방식을 확대·축소 적용할 의도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국경을 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배제에 있어서 적용 대상을 변경하지 않고 적용 방법만 간접세액공제방식에서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개정으로 인한 혼란이 크지 않도록 하였다³⁷⁾.

(2) 면제소득의 범위

국외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하는 소득은 해외자회사배당소득으로 제한된다. 모회사의 소득 산정 시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의 95%를 익금불산입하는 형태로 과세면제하고 수취배당액 중 5% 상당액은 해당 배당 관련 비용으로 간주하여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금에서 제외한다. 즉, 모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부채이자 등)은 이미 모회사에서 손금산입되

35) 법인세법 제23조의2, 동 시행령 제22조의3①

36) 유럽의 경우 5% 정도의 낮은 소유주식 기준으로 익금불산입을 인정하거나 영국과 같이 소유 주식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각 국가의 제도 간에 격차가 존재하지만, 일정 정도는 조세조약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룹기업의 연결 여부에 따라 불가피하게 각국의 「해외자회사 합산세제」(또는 ‘조세피난처세제’)나 조세회피부인규정에 위배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각국 세제의 정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과세당국은 조세회피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조약상대국의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7)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약에서 규정하는 지분비율을 대신 적용하므로 25% 미만의 보유 자회사에 대해서도 간접세액공제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25%미만의 보유 자회사에 대해서도 간접세액공제를 인정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호주 등이고, 10%의 보유비율을 정한 국가는 미국, 브라질, 호주, 카자흐스탄, 15%를 정한 국가는 프랑스이다. 일본의 법제상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해서도 이러한 적용이 가능하지만, 법률상 그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법령 22조의2 ④).

있을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 혜택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³⁸⁾. 기업 그룹의 재무상황에 따라 비용이 5% 미만인 경우, 실질금액을 공제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일반적인 사업 실패를 반영하여 5%의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해외 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의 도입이 간접세액공제의 복잡성을 개선하고자하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과세면제되는 해외자회사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정의하는 해외자회사배당이 아니고 일본의 법인세법에서 과세목적상 정의하는 배당을 의미한다³⁹⁾. 또한 간주배당도 익금불산입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간주배당은 합병, 분할, 자본환급(return of capital), 조직변경 등에서 발생하는 현금 및 기타 자산의 분배이다. 또한 주식의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배당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외자회사의 우선주로부터의 배당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⁴⁰⁾.

해외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에 의해 해외자회사의 배당이 과세소득 산출시 공제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이 지불한 배당이 과세소득 산출시 공제되지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이 지불한 배당이 과세소득 산출시 공제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국가에 위치한 해외자회사인 경우에도 동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territorial system을 도입한 국가들이 완전한 형태의 territorial system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일본 역시 배당소득에 한해 국외소득면제제도를 적용하는 형태로 도입하였으며 해외지점의 소득이나 해외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 등에 대해서는 국외소득 면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면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외국지점은 현행제도상 국내법인자체의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발생시에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외누적이익의 자금환류 촉진과 관련이 없고 또한 지점 이익산정의 곤란성이나 고정사업장 귀속이익의 취급과 관련한 OECD 논의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經濟産業性 2008). 외국지점과 외국자회사를 세제상 동일한 것으로 처리할 필요성은 있지만 국외소득면제방식 도입의 목적으로 하여 해외자금의 국

38)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5%의 일률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비용에 대한 개별 대응이 아니라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모회사가 부담하는 글로벌이자 공제 제한의 형태로 제도를 설계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방식을 Worldwide Debt Cap이라 한다. 이는 그룹 전체의 부채금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이자 부담(net base)을 영국 unit이 부담하게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그룹 기업의 금융비용(finance cost)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어서 그 효과가 주목된다. 일률공제방식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공제율이 실패와 큰 괴리가 없다는 것이 검증되지 않으면 안된다.

39) 해외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정의하는 해외자회사 배당과 일본의 법인세법상 해외자회사 배당의 정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과세목적상 해외자회사 배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40) 우선주식의 우선배당부분은 외국법인세의 정도에 따라 배당금액이 좌우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간접 외국세액공제의 적용대상 배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내환류가 중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외국지점소득에 대한 과세면제는 제외하였다.

국외소득면제방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유형은 배당소득에 한하며, 이자, 사용료, 자본이득은 국외소득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자와 사용료는 해외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세제에서 비용으로 공제된 부분이므로 국내에서도 과세되지 않으면 과세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국외소득면제방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자본이득도 배당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것이지만 자본손실과의 관계, 조세회피 등의 개념이나 소득산정의 어려움을 포함한 실무적인 어려움, 주식을 매각할 때마다 과세가 이연되는 것을 감독하는 문제로 인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비용배분

일본의 경우 비용공제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은 달리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국내법인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과세면제 대상에 귀속되는 비용의 공제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과소자본세제를 통해 지불이자의 공제를 제한하고 있다⁴¹⁾.

모회사의 소득 산정시 해외자회사 배당과 관련한 비용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외소득의 5%라는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간편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해외자회사 배당 중 5%의 비용을 차감한 95%만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외소득의 산출에 사용되는 비용을 결정함에 있어, 수취배당액으로부터 당해 배당을 수취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중 어느 것이 적당한지에 대하여 일본기업의 실태(비용(예 : 부채이자)이 수취배당액 중 어느 정도 금액을 차지하는 지 등)나 실액계산을 행하기 위한 사무비용, 비용 파악의 곤란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지적하고 기업마다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을 향후 과제로 지시하였다(經濟産業性 2008).

41) 과소자본세제란 기업그룹에 의한 국제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모회사로부터의 출자를 최소한으로 하고 해외 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을 많이 함으로써 일본 모회사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조세회피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소자본세제에 의하면, 법인의 해외 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이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응하는 지불이자는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단, 법인이 유사 내국법인의 부채비율(debt-to-equity)과 비교하여 타당한 비율을 제시한 경우에는 3배 대신에 제시한 배율을 적용할 수 있다.

IV. 시사점 및 대안적 과세체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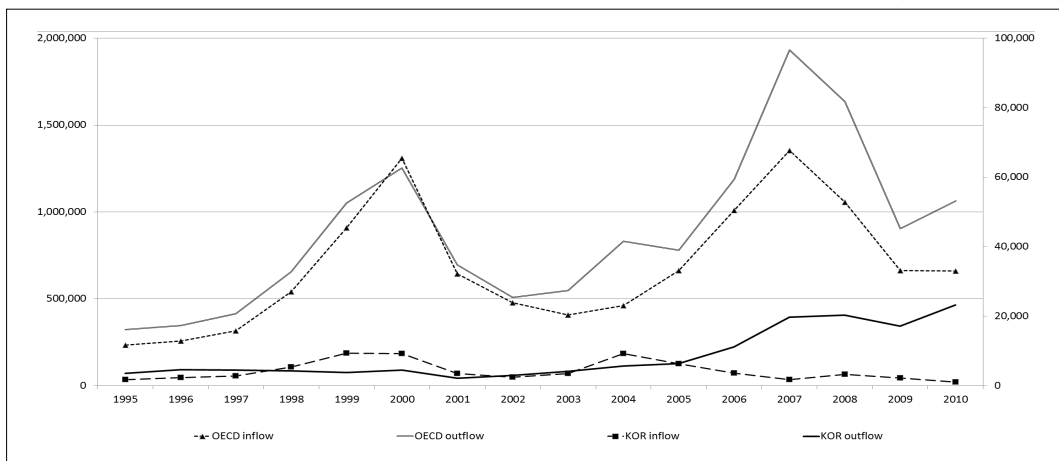
1. 우리나라의 국외소득면제방식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가. 국제경쟁력 관점에서의 검토

<그림 1>과 같이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inflow FDI)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국외직접투자(outflow FDI)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OECD 회원국 평균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국외직접투자의 방향성은 대체로 같다. 이를 통해 2004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자본유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세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기업의 국제경쟁력 관점을 검토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우리나라와 OECD의 해외직접투자 비교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OECD Foreign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종래 세액공제방식 하에서는 국내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세후수익률이 낮으므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시 되었다. 반대로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다국적 기업의 세부담에 국내 세율이 아닌 투자한 국가의 세율만 영향을 주므로, 국내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장점은 국내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방식 하에서도 국내투자에 의한 세후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문제되지 않는다. 다음의 <표 2>를 보면 본사의 소재국이 각각 다르고, 아일랜드에 동종 업종의 자회사를 둔 경우

에 세액공제방식 하에서 본사의 소재지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본사를 아일랜드에 둔 경우가 12.5억원, 본사를 우리나라에 둔 경우는 24.2억원, 본사를 미국에 둔 경우는 39.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세액공제방식 하에서는 법인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세부담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세액공제방식 하에서 아일랜드 내 경쟁기업 간 조세부담액 비교

	본사 아일랜드	본사 우리나라	본사 미국
세전이익	100억원	100억원	100억원
법인소득세율	12.5%	24.2%	39.2%
아일랜드 법인소득세	12.5억원	12.5억원	12.5억원
본사 법인소득세 ¹⁾	12.5억원	24.2억원	39.2억원
본사의 추가납부세액	0	12.3억원	26.7억원
총부담세액	12.5억원	24.2억원	39.2억원

주1) 아일랜드 자회사 세전이익을 모두 본사로 송금할 경우를 가정

이러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법인소득세율이 높았던 영국과 일본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래 세액공제방식에서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OECD에서 법인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미국도 국외소득면제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율은 국제경쟁력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표 3>은 2012년 OECD의 법인세율(중앙정부의 법인세율)과 법인소득세율(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인세율을 합산한 세율)을 보여주고 있다.⁴²⁾

OECD 법인소득세율의 평균은 25.5%로 계산되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율이 24.2%이므로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던 영국, 일본, 미국보다는 국제경쟁력 관점에서 전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세피난처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율보다 낮은 국가가 13개국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세액공제 방식 하에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싱가포르(17%), 홍콩(16.5%), 대만(17%)의 세율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높은 수준이다. 또한 영국이 2013년 법인세율을 23%까지 인하할 예정⁴³⁾이고, 일본도 2012년에 법인세율을 25.5%로 인하하는 등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42) 법정세율이 아닌 실효세율을 바탕으로 한 비교·검토도 필요하지만 각국의 실효세율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자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실효세율에 의한 분석은 논외로 한다.

43) <http://www.hmrc.gov.uk/rates/corp.htm>

〈표 3〉 2012년 OECD 법인소득세율

(단위 : %)

	법인세율			법인세율	
	중앙	중앙+지방		중앙	중앙+지방
미국	35.0	39.1	네덜란드	25.0	25.0
프랑스	34.4	34.4	이스라엘	25.0	25.0
벨기에	33.0	34.0	핀란드	24.5	24.5
일본 ¹⁾	25.5	34.0 ²⁾	한국	22.0	24.2
포르투갈	25.0	31.5	영국	24.0	24.0
독일	15.0	30.2	스위스	8.5	21.2
호주	30.0	30.0	에스토니아	21.0	21.0
멕시코	30.0	30.0	그리스	20.0	20.0
스페인	30.0	30.0	아이슬란드	20.0	20.0
룩셈부르크	21.0	28.8	슬로베니아	20.0	20.0
노르웨이	28.0	28.0	터키	20.0	20.0
뉴질랜드	28.0	28.0	체코	19.0	19.0
이탈리아	27.5	27.5	헝가리	19.0	19.0
스웨덴	26.3	26.3	폴란드	19.0	19.0
캐나다	15.0	26.1	슬로바키아	19.0	19.0
덴마크	25.0	25.0	칠레	17.0	17.0
오스트리아	25.0	25.0	아일랜드	12.5	12.5

주1) OECD Tax Database상 2012년 자료에 보고되지 않은 일본의 세율은 일본 정부자료 참조

주2) $34.0 = 25.5\%(\text{법인세율}) + 3.26\%(\text{사업세율}) + 5.2785\%(\text{주민세율})$

자료 : OECD Tax Database,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rporation/084.htm

특히, <표 1>에서와 같이 OECD 회원국 중 26개국이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더라도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표 2>의 사실관계에서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한 헝가리와 프랑스에 본사를 둔 경우와 세액공제방식을 운영하는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경우를 비교해보면 <표 4>와 같다. 즉, 국외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법인소득세율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세 부담이 모두 12.5억인 반면,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면 세 부담이 24.2억원이 된다. 만일 우리나라도 국외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국내 세율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의 세 부담이 12.5억원으로 동일하게 될 것이다. <표 2>와 <표 4>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상황은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법인소득세율이 높은 국가 즉, 미국, 멕시코,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는 경우이다. 따라서 국제경쟁

력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도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표 4〉 국외소득면제방식 하에서 아일랜드 내 경쟁기업 간 조세부담액 비교

	본사 헝가리	본사 우리나라	본사 프랑스
세전이익	100억원	100억원	100억원
법인소득세율	19.0%	24.2%	34.4%
아일랜드 법인소득세	12.5억원	12.5억원	12.5억원
본사 법인소득세 ¹⁾	0	24.2억원	0
본사의 추가납부세액	0	12.3억원	0
총부담세액	12.5억원	24.2억원	12.5억원

주1) 아일랜드 자회사 세전이익을 모두 본사로 송금할 경우를 가정

나. 국내투자 활성화 차원에서의 검토

전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종래 자본수출국들은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일본과 영국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수익을 국내로 환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흐름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림 1>에서 본 바와 같이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외직접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우리 정부는 대기업의 국내 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방향에서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른 방안으로 국외소득면제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외소득면제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기에 앞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해외유보소득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국내로 전환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논의된 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내 과세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은 약 1.4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Thomas J. 2011). 일본도 2001년 대비 2004년에 해외자회사로부터의 수취배당금이 5,270억엔에서 8,622억엔으로 약 1.6배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에 해외자회사의 내부유보액은 1,378억엔에서 2억 1,811억엔으로 약 16배 증가하여 소득의 해외유보가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내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의 규모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다만, 세액공제방식의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해외이익의 유보 유인이 있고,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급증한 측면에 비추어 우리기업의 해외이익 유보 가능성이 적다

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최근 발표된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결과⁴⁴⁾를 보면 우리나라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이전한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과세를 적용받지 않게 해외에 소득을 유보한다면 법인세율이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보다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표 5>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액 중 우리나라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홍콩, 싱가포르, 케이만군도, 영국령 버진군도의 해외투자액 비중을 보면 무려 8.3%~16.0%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우리나라의 조세피난처 대외투자액 규모

(단위 : 천달러, %)

	홍콩	싱가포르	케이만 군도	영국령 버진군도	4대 조세피난처 투자액 합계 (총투자액 중 비율)	총투자액
2002	230,486	58,648	53,580	15,769	358,483 (8.9)	4,032,096
2003	112,039	239,426	403,843	11,478	766,786 (16.0)	4,801,502
2004	234,026	171,378	360,393	37,395	803,192 (11.9)	6,772,534
2005	377,391	128,314	60,452	36,270	602,427 (8.3)	7,301,716
2006	877,251	305,136	221,787	48,005	1,452,179 (12.3)	11,820,412
2007	1,867,213	516,497	349,838	85,668	2,819,216 (12.5)	22,619,516
2008	2,588,874	608,096	235,239	119,624	3,551,833 (14.8)	23,969,591
2009	1,565,469	275,644	461,115	52,100	2,354,328 (11.5)	20,394,540
2010	1,210,518	406,737	593,981	16,289	2,227,525 (9.1)	24,370,971
2011	1,324,462	907,932	327,868	82,348	2,642,610 (10.3)	25,768,61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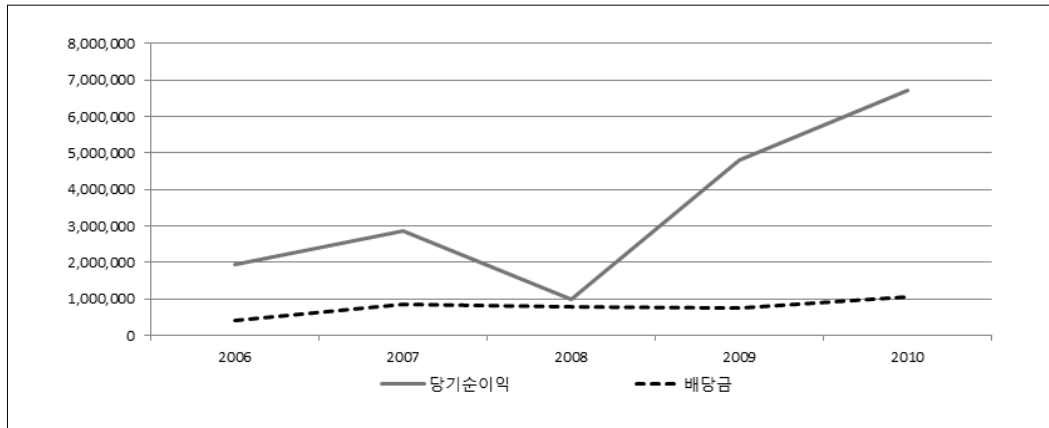
또한 <그림 2>와 같이 최근 5개년도의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우리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데 비해 국내로의 배당금 증가추세는 약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소득을 유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기업의 해외이익 유보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고, 국내투자 활성화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제로 해외유보소득이 국내로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국내 투자여건에 따라 해외유보소득을 굳이 국내로 송금할 필요가 없거나 국내 모회사로 송금하더라도 국내 투자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44) 국세청 보도자료, 1/4분기 역외탈세 조사결과 4,741억원 추정(2012.4.11),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탈세기업 적발하여 수 천억원 세금부과(2010.5.25),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자 등 역외탈세자 42명 세무조사 결과(2010.5.6)

〈그림 2〉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과 배당금 현황(2006~2010년)

(단위 : 천달러)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0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그러나 미국에서 2004년에 한시적인 송금세 인하를 실시함에 따라 843개 기업이 3,620억 달러를 국내로 송금했으며(Melissa 2008), 최근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한 일본도 본국으로의 배당 비율이 도입 전 41.9%에서 도입 후 69.5%로 증가⁴⁵⁾하였고 현지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 용도 중 연구개발·설비투자가 44.1%로 가장 높아⁴⁶⁾ 국내 투자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내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⁴⁷⁾. 다만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국내투자 활성화 효과 유무는 국외소득면제방식 자체만으로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국내로 송금된 자금이 국내투자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외소득면제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다른 조세제도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할 경우 영국이 R&D 세액공제와 로열티소득 우대제도를 보완한 것과 같이, 국내로 송금된 자금이 국내투자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보완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45)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제경제교류재단 조사결과(2011)를 인용하면서 일본이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한 후 현지에서 이익을 유보하는 기업의 비율은 감소하고 본국에 배당금을 환원하는 기업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해외 이익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http://www.meti.go.jp/report/whitepaper/mono/2011/pdf/gaiyou_01.pdf

46) http://www.meti.go.jp/report/tsuhaku2011/2011honbun_p/2011_gaiyou.pdf

47) 다만, 우리나라에서의 유일한 실증 논문인 안종석·정재호(2009)의 연구는 우리나라가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할 경우 경제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한계유효세율을 분석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 하에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에 미달하는 기업의 경우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하면 한계유효세율이 인하되지만 변화폭이 작은 반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계유효세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대안으로서의 검토

영국과 일본이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worldwide system 하에서 외국세액공제방식의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그룹의 지배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할 경우 행정상 부담이 큰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여 왔다(HM Treasury & HMRC 2007, 13). 또한 해외직접투자와 달리 해외포트폴리오투자자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던 영국의 종전 세법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EC 조약에 위배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영국은 국제조세법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과제를 안게 된 것도 제도전환의 배경이 되었다.

일본도 외국세액공제방식의 주요 단점으로 행정상 비용이 크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특히,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자회사의 해당 배당에 관련된 사업연도 소득에 관한 확정세액만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세율 부담분을 외국법인세액의 계산에서 제외하는 점 등으로 인해 공제대상인 외국법인세액의 계산과정은 복잡한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松田直樹 2009, 48). 또 다른 단점으로서 일괄한도액 방식에 따른 공제액의 상호유용 문제(cross-crediting)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 A, 외국 B에서 각각 100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A국의 세율이 50%, B국의 세율이 20%, 자국의 세율이 30%라고 가정하자. 이 때 국가별한도액 방식은 A국의 소득에 대해 공제한도액이 30, B국의 소득에 대해 공제한도액이 20이 되어 공제한도액의 합계는 50이 된다. 그러나 일괄한도액 방식에 의할 경우 공제한도액이 60($=200 \times 0.3$)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본래 목적을 초과하는 세액공제를 인정하게 된다. 즉, 자국보다도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납부했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본래 과세해야 하지만, 상호유용을 인정하게 되면 저세율국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여유분과 상쇄되어 과세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① 비과세 외국소득의 2/3 제외, ② 국외소득에 대한 상한 90% 설정, ③ 50% 초과 고세율 외국세액부분의 제외규정이 도입하였지만, 이로 인해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은 더욱 복잡해지고 상호유용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⁸⁾.

우리나라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일괄한도액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유용 문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호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복잡한 장치를 두어야

48) 미국은 ‘상호유용’에 대응해 일괄한도액 방식 하에 basket 방식이 도입되었다. 즉, 일반소득(general category income)과 수동소득(passive category income)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상호유용’은 동일한 소득 basket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이로 인해 저세율국에서 이동성 높은 수동소득을 계상하고 이에 대해 외국세액공제 여유액을 고세율국의 능동소득에 대해 외국세액공제 초과액과 상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소득 basket은 소득항목별한도액 계산에 비해 넓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상당한 정도의 상호유용이 인정된다.

하므로, 합리적인 이중과세 방지라는 이상과 행정 부담 완화의 측면은 상충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충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국외소득면제방식 도입시 과세체계 제안

가. 항구적 제도 vs. 임시적 제도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하게 될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제도의 도입 시점에서 이를 항구적 제도로써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임시적 제도로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룰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임시적인 제도로써 도입할 경우, 현재의 과세체계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한시적이고 예외적으로 국외소득면제방식을 운영하는 형태로 인식될 것이므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도의 시행 효과에 따라 동 제도를 폐지할 것인지 또는 항구적 제도로 전환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도입 초기부터 항구적 제도로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worldwide system에 territorial system을 일부 도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제도의 설계에서 포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국외소득면제방식을 임시적 제도로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로는 첫째, 제도의 적용 시기에 일시적인 자금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는 등 임시적 조치를 활용한 조세전략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적용시한 경과 후에는 역으로 자금의 국내 유입이 급감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납세자들로 하여금 일시적 감세정책으로 받아들여져서 무리하게 국내로의 자금을 유입하는 경우 기업 경영에 있어서 합리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시적 조치로서 제도를 설계할 경우에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실무적인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 국외소득면제방식을 항구적 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임시적 제도로 도입하는 경우보다 제도 설계의 측면에서 더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납세자와 과세관청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합리적 판단에 의해 대응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시점부터 항구적 제도로 설계하되 도입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용요건이나 적용대상 소득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후 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과세면제방식의 도입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조세회피의 방지 및 국내 투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법인세법 제23조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조문인 법인세법 제23조의2조를 통해 해외자회사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만일 항구적 제도로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 익금불산입 내용이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나. 면제소득의 범위

국제적 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worldwide system에서 territorial system으로 전환한 국가도 있고 미국과 같이 아직은 전환에 대한 논의만 활발한 국가도 있다. OECD 전례를 보면, 현재 34개국 중 8개국만이 worldwid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완전한 형태의 territorial system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로열티소득과 같은 수동적 소득과 주식의 양도차익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 등도 과세면제소득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worldwide system에 기반을 두고 일부 territorial system을 도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한해 territorial system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과세면제제도의 도입시 해외자회사 주식 관련 자본이득을 과세면제 범위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론적으로는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해외자회사의 이익잉여금 중 모회사에 배당으로 분배될 범위에서 주식양도차익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2011, 10). 그러나 실무적인 복잡성과 주식의 매각시점까지 과세가 미루어지는 점 등으로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배당소득과 달리 주식의 경우,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와 자본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손익과의 상계 문제가 상당한 행정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 역시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나 사용료 같은 수동적 소득은 주로 국내에서 비용이 인식되고 그 결과물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외국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고 조세조약에서는 거주지국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추세에 있다. 또한 수동적 소득은 일반적으로 계약조건에 의해 지불금액 및 지불시기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유보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시기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하겠다.

국제적인 추세와 제도의 적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과세면제소득의 범위에서 수동적 소득과 관련 주식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제외하고 배당소득에 한해 적용하는 것 즉, worldwide system에 기반을 두고 일부 territorial system을 도입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배당소득에 한해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할 경우 국내투자자와 국외투자자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내투자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와와의 조화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할 경우 해외자회사에 대한 요건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지분에 대한 최소보유비율 또는 최소 보유기간을 설정하거나 해외자회사가 소재한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에 관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소기업의 경우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해외자회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⁴⁹⁾ 해외자회사가 적격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적용대상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기업규모 및 지분율에 제한 없이 국외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반면, 일본은 해외자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과세면제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외소득면제방식의 도입은 현재 국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이란 내국법인이 자회사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는 모회사가 납부한 것이므로 모회사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해외진출 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외국자회사는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⁵⁰⁾⁵¹⁾.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은 경우 외국에서 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를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제도를 세액공제방식에서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적용대상 자회사의 범위는 도입 초기에는 세액공제방식과 동일하게 지분율 10% 요건과 보유기간 6개월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⁵²⁾. 반면, 지분율 10%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포트폴리오 투자

49) 이에 대해 동일한 수익에 대해 다르게 과세하는 이유가 명백하지 않고 소기업과 중·대기업에 대한 과세에 차등을 두는 것이 오히려 세제를 복잡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Gammie, Griffith and Miller (2008), p.255)

50)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9항

51) 외국자회사 범위는 2010.12.30. 세법 개정 이전까지 지분율 요건이 20% 이상이었으나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고 해외자회사의 국내송금 유인 효과를 위해 지분율 요건을 10%로 인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을 완화하였다.

52) 조세조약에 의해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세조약의 내용을 따르도록 해야겠지만 조약에 의한 경우는 논외로 한다.

(특히, 해외투자펀드)에는 종전의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포트폴리오투자에는 CFC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할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조세회피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 간에 세제상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장기적으로는 투자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 비용배분

세액공제방식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비용배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과세면제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모회사 및 자회사의 소득의 원천별로 분리하여 배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 중 면제소득의 창출과 관련된 비용을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미 해외원천배당소득을 도입한 국가들은 대체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용의 공제를 인정하기는 하되, 공제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부채이자 등)은 이미 모회사에서 손금산입되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에 대응하는 소득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액 중 일부는 과세면제 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일률적인 비용공제 방식 외에 과소자본규정 및 특별규정 등을 통해 과도한 비용 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원천배당 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도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는 범위에서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비용의 이중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의 단순화를 위해 일률적으로 배당액의 5%를 모회사에서 공제한 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면제금액에서 차감하고 있다. 일본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5%를 정한 배경으로 단지 독일의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적정수준의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일률적인 비용공제 규정이 아니라면, 보다 정교한 비용공제 규정이 필요하겠지만 지나치게 제도가 복잡해지거나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방식이라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territorial system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비용공제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되는 모델이 없는 상황이므로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일률공제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그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5%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기존 도입국가에 대한 평가결과나 국내의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 조세회피방지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할 경우 국외소득면제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중면세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중면세는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원천으로 거주지국에 배당되었을 때 거주지국에서 이를 과세하지 않아서 원천지국이나 거주지국 모두에서 과세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중면세의 가능성은 우리나라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할 경우 문제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유가증권양도차익은 원천지국이 아닌 거주지국에서 과세권을 갖고 있는데, 국내법에서 유가증권양도차익을 면세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중면세의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과세면제요건을 설정할 때 제한규정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경감세율 대상인 로열티소득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룹공제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경우 그 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면제되지 않도록 적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 저세율국으로 인위적인 소득이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장치로서 CFC 제도는 국외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한 입법례에서 조세회피 목적의 인위적인 소득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⁵³⁾. 그 일환으로 영국은 국외소득면제방식의 도입과 함께 CFC 제도에 거래접근법(transactional approach)을 도입하게 되면 다국적 기업들이 순수한 사업 활동에서 수익을 분리하거나 수익률이 낮은 사업의 수익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의 인위적인 수익이전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보고(HM Treasury & HMRC 2007, 18), 종전 실체접근법(entity approach)에서 거래접근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CFC 제도에서 실체접근법을 적용하던 일본도 동일한 취지에서 거래접근법을 일부 수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할 경우 조세회피대상이 되는 소득의 유형을 정교하게 설정하여 거래접근법으로 전환하거나 일본과 같이 거래접근법을 일부 수용하는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조세회피방지 장치 뿐만 아니라 R&D 세액공제와 로열티소득 우대제도와 같이 국내로의 투자유인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투자 유인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이상에서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에 관한 과세이론과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과세면제방식을 도입한 영국과 일본의 도입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방식으로서 worldwide system을 채택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자본수출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는 worldwide system을 많이 채택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이 증가하고 자

53)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은 CFC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와 네덜란드는 CFC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PWC(2010), JCT(2011)의 보고서를 참조.

본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자국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점차 territorial system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은 2009년 영국과 일본이 territorial system으로 전환함으로써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worldwide system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2005년 이후 territorial system으로의 전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국외소득면제방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국제경쟁력 측면, 국내투자 활성화차원 그리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안으로서의 측면을 고려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inflow FDI)는 감소하는 반면 국외직접투자(outflow FDI)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세제 측면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국내 세율이 아닌 투자 국가의 세율만이 세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다국적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본유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자본유입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외투자에 대한 경쟁력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내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유보소득이 국내 투자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한시적인 송금세 인하로 국내 송금 규모가 증가한 사례 또는 일본이 국외소득면제방식 도입 후 국내 송금 규모가 증가한 사례를 통해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서의 전환으로 어느 정도는 국내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외소득면제방식 자체만으로 국내투자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로 송금된 자금이 국내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중과세의 조정방식으로서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이다. 일본과 영국이 이중과세 조정방식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버리고 국외소득면제방식을 취한 데에는 행정상 부담이 크다는 점과 일괄한도 방식에 따른 공제액의 상호유용 문제가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일본과 영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그만큼 제도가 정교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괄한도 방식에 의한 상호유용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담의 완화와 이중과세의 합리적 조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국외소득면제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의 검토를 거쳐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하게 될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는 임시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 제도로써 도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외소득면제방식은 면제소득의 범위 또는 적용대상 자회사의 범위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따라 다양한 제도의 설계가 가능하다. 면제소득의 범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worldwide system에 기반을 두고 배당소득에 한해 territorial system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용대상 자회사의 범위는 현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제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용배분의 문제는 세액공제방식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지만 과세면제방식에서는 이중공제 방지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모회사 및 자회사의 소득 원천별로 배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므로 배당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다. 단지 일정비율을 어느 정도로 결정할 지에 대해서는 기존 도입 국가의 사례와 우리나라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외소득면제방식의 직접적인 제도 설계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마련이다. 국외소득면제방식이 외국세액공제방식에 비해 단순한 반면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에 국외소득면제방식을 이미 도입한 국가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제도 도입의 효과와 국외소득면제방식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조세회피 방지 방안 및 국내 투자 유인 정책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제도를 설계한다면, 국외소득면제방식의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재진 · 송은주 · 마정화. 2012.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 비교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안종석. 2009.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세무학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59 - 102.
- 안종석 · 정재호. 2009. 「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토 : 거주지주의 대 원천지주의」, 한국조세연구원.
- 정재호 · 구자은 · 송은주. 2009. 「미국 · 일본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 정현경. 2009.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시스템의 대안으로써 Territorial System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수출입은행. 2011. 「2010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 A Joint Report by The White House and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2. The president's 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
- Altshuler, Rosanne and Harry Grubert. 2001. Where Will They Go If We Go Territorial? dividend Exemption and the Location Decision of U.S. Multinational Corporation. National Tax Journal. Vol LIX, No.4 : 803-307.
- Chorvat, Terrence R. 2000. Ending the Taxation of Foreign Business Income. Law and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Working Paper No. 00-16 : 1-33.
- Gammie, Malcolm, Griffith Rachel and Miller Helen. 2008. The IFS Green Budget.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 Graetz, Michael J., Michael M. O'hear. 1997. “The Original Intent” of U.S. International Taxation. Duke Law Journal : 1021-1109.
- Grubert, Harry. 2001. Enacting Dividend Exemption and Tax Revenue. National Tax Journal. Vol LIX. No.4 : 811-851.
- HM treasury & HMRC. 2007. Taxation of the foreign profits of companies : a discussion document.
- Lee, Thomas J. 2011. U.S. Equity Strategy Flash. J.P. Morgan.
- Melissa Redmiles. 2008. The One-Time Received Dividends Deduction.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Internal Revenue Service : 102-114.
- Parillo, Kristen A. 2009. Obama Plan Would Harm U.S. Multinationals, Olso Says. Tax notes. Vol. 123. No.9 : 1088-1089.
- PWC. 2010. A Comparison of Key Aspects of the International Tax Systems of Major OECD and Developing Countries.
- Report of the president's advisory panel on federal tax reform. 2005. Simple, fair and pro-growth : Proposals to fix America's tax system.
- Sheppard, Lee A. 2011. “What Hath Britain Wrought?”. Tax Notes International. Tax Analysts.

- Staff of 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2005. "Options to improve tax compliance and reform tax expenditures".
- 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2011. Background and Selected Issues related to the U.S. International Tax System and Systems that Exempt Foreign Business Income. JCX-33-11.
- The president's economic recovery advisory board. 2010. The report on tax reform options : Simplification, Compliance, and corporate taxation.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07. Approache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U.S. Business Tax System for the 21st Century.
- Voisey, Patrick. 2009. "Finance Act 2009 Notes—Section 34 and Schedule 14 : corporation tax treatment of company distributions received", British Tax Review Issue 5 : 533-541.
- 經濟産業性. 2008. "我が國企業の海外利益の資金還流について—海外子會社からの配当についての益金不算入制度導入に向けて".
- 松田直樹. 2009. "外國子會社配当益金不算入制度創設の含意—移轉価格と租稅回避への影響に関する考察を中心として—". 稅大論叢 63号 : 1-187.
- 青山慶二. 2009a. "米英における海外子會社配当の課稅改革案 について". 筑波ロー・ジャーナル : 29-62.
- _____. 2009b. "外國子會社配当益金不算入制度の考察". 筑波ロー・ジャーナル : 99-117.
- 淺妻章如. 2006. "國外所得免稅(又は任向地主義課稅)移行論 についてのアメリカの 理論 の 紹介と考察". 財務省財務總合研究所. ファイナンシャル・レビュー : 152-164.
-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
- 일본 재무부 홈페이지. <http://www.mof.go.jp>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www.koreaexim.go.kr/kr/work/check/oversea/nation.jsp>
- OECD Foreign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http://www.oecd.org/daf/internationalinvestment/investmentstatisticsandanalysis/foreigndirectinvestmentstatistics-oecdanalysisandforecasts.htm>
- OECD Tax Database. <http://www.oecd.org/tax/taxpolicyanalysis/oecdtaxdatabase.htm>

Introduction of Territorial System for Taxing Foreign Dividends

-Focus on Introduction of Territorial System in UK and Japan -

Eun Ju Song* · Jeong Hwa Ma**

〈Abstract〉

In the past,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have adopted a worldwide system on international tax system to achieve capital export neutrality. In recent years, however, international tax system has been changing from a worldwide system to a territorial system. Depending on cross-border international movement of capital have been increasing, many countries have been trying to strengthen corporate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and redesigning competitive tax system. As a result, the trend on international tax system is changing from a worldwide system to a territorial system and UK and Japan have adopted a territorial system in 2009,

Considering the legislative background of introducing a territorial system in UK and Japan, we can get the implication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territorial system in aspects of improv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international corporation, increasing in domestic investment and alternative method of foreign tax credit in Korea.

This paper also suggests details on the new tax system on the foreign source income that include types of exempt income, deductibility of costs indirectly associated with foreign source income and etc. in case a territorial system is adopted in Korea.

First, we need to introduce a permanent rule rather than temporary rule territorial system to ensur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for both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Second, we suggest foreign dividend income exempted in the domestic tax system as a form of a territorial system. It means that other foreign income except dividend will be taxed by a worldwide system like most countries operating a territorial system.

Third, the parent company must hold a minimum ownership in the shares of the foreign subsidiary paying the dividend. A threshold criteria for a minimum ownership must be decided by

*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Research Specialist(Ph.D. Student,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Research Specialist(Ph.D in Law)

considering the current indirect foreign tax credit system in Korea.

Finally, it'll be reasonable to set a certain range of the dividend added back as a proxy for non-deductible expenses. The range of a substitute for denying deductibility of indirect expenses incurred to generate foreign dividend income should be decided by considering other tax systems introducing a territorial system and actual business environments in Korea. Moreover, we need to arrange anti-tax avoidance rules and tax incentives to domestic investments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a territorial system.

〈Key words〉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avoidance, Dividend exemption, Foreign tax credit, Competitive tax system